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5. 16.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1년 4월 26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1년 5월 6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 5.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정희)

가. 제안이유

-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분야별 정보화 촉진과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및 국민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 (제명)
-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원칙을 정함 (안 제3조)
-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각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보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구(區)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보화추진위원회로

-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안 제14조)
- 행정, 교육, 복지, 산업, 문화, 주민생활 등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보화사업 추진의 기술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근거 조항을 둠. (안 제15조 ~ 안 제26조)
 - 구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의 관리근거와 제공에 관한 기준, 수수료, 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 의무 등을 정함(안 제27조 ~ 안 제29조)
 - 정보화 서비스의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문화의 창달 원칙을 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시책,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정보격차해소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0조 ~ 안 제37조)
 - 지역주민의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정보화교육 대상, 수강료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8조 ~ 안 제42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정비 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상위 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2009. 5.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었으며,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게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구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 현행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임.
- 안 제4조와 제5조에 우리구 지역정보화추진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한 바 이는 우리구 지역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것임.
- 안 제3장 제8조부터 제14조에는 구성인원 15명 이내 임기 2년으로 하여 영등

포구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장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35조에는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현재 우리구에서 실시중인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기증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이용의 건전성과 보편성을 보장하고, 정보화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한 규정과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등 정보화 관련 상위법의 통합 폐합 등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후속 조치사항으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중 “핵심” 과 같은 불명확한 용어와, “우선적으로” 와 같은 타 예산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용어를 삭제하는 등 본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함.

나. 주요골자

- 안 제2조 제6호와 안 제6조 제1항 중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으로 하고,
- 안 제5조 제2항 중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 안 제10조 제2항 중 “구의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하고,
- 안 제29조 제2항 중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51호
----------	------------

제안년월일 : 2011. 5.

제 출 자 : 권영식 위원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중 “핵심” 과 같은 불명확한 용어와, “우선적으로” 와 같은 타 예산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용어를 삭제하는 등 본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2조 제6호와 안 제6조 제1항 중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으로 하고,
- 안 제5조 제2항 중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 안 제10조 제2항 중
“구의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하고,
- 안 제29조 제2항 중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 제6호와 안 제6조 제1항 중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으로 하고,
- 안 제5조 제2항 중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 안 제10조 제2항 중
“구의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하고,
- 안 제29조 제2항 중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추진위원회에 위원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인터넷 시스템 개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 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제7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에 의해”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제21조(정보자료 수수료), 제22조(수수료 감면대상)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28조”로 한다.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고 구청장에
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활
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으로서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
하는 구장이 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정보
화 계획과 연계·조정
2.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를 위한 시책의 추진
5.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
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정보화의 표준화 추진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
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
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
수·교사·연구원, **구의원**, 업무관련 국·과장
중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
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
추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9조(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 ① 구
청장은 구에 설치·운영되는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
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은 최적의 상
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담당하는 간부공무원

②항 ~ ③항 (개정안과 같음)

제10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
는 구의원**, -----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제29조(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 ① (개
정안과 같음)

② -----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1 호
----------	--------

제출연월일 : 2011.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분야별 정보화 추진과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및 구민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 (제명)
- 나.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원칙을 정함** (안 제3조)
- 다. 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각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보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라. 구(區) 정보화 사업 심의 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보화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안 제14조)
- 마. 행정, 교육, 복지, 산업, 문화, 주민생활 등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보화사업 추진의 기술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근거 조항을 둠. (안 제15조 ~ 안 제26조)
- 바. 구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의 관리근거와 제공에 관한 기준, 수수료, 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 의무** 등을 정함(안 제27조 ~ 안 제29조)

- 사. 정보화 서비스의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문화의 창달 원칙을 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시책,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정보격차해소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0조 ~ 안 제37조)
- 아. 지역주민의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정보화교육 대상, 수강료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8조 ~ 안 제42조)
- 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정비 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용어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및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1. 3.17 ~ 4. 6 (20일간)】 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사무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자료"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4.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정보화책임관(Chief Information Officer)"이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 하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써,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추진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민간과의 대외협력체계 마련 및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2.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대책 마련
3. 구민이 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필요한 조치 강구
4. 정보화 시책추진에 필요한 자원마련의 노력 경주
5.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2장 정보화 시책 수립·체계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시행계획 및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각 분야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확산
5.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6.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7.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
8.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활성화
9.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2.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3. 자치구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정보화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고 구청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으로서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정보화 계획과 연계·조정
2.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시책의 추진
5.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정보화의 표준화 추진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정보화 추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화추진위원회

제8조(설치)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 정보화 정책 또는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 구의원, 업무관련 국·과장 중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 추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위원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심의에 참여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정보화 추진

제15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교육, 복지, 산업, 문화, 주민생활 등 분야별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보안성 보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해당 분야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의 기술적 평가·심의 등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구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구청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적 민원처리)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적

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2조(디지털행정의 추진)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유비쿼터스도시 건설) 구청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 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표준화)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화 용역)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하려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화자료 관리·제공

제27조(정보화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

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화자료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정보화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구에 설치·운영되는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은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30조(정보문화의 창달) 구청장은 구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4.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5.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정보문화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

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구 관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민(民), 관(官) 공동출자 개발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구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3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각종 정보화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2.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35조(정보통신기기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5. 그 밖에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6조(정보격차해소 교육) ①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해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7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시설의 출입제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화교육

제38조(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소속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5.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정보화교육 기반구축) ①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자체 상설교육장, 동주민센터, 교육기관, 학원 등 교육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정보화교육 강사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강사로 위촉하여 수준높은 정보화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자체적으로 양성한 정보문화 인력을 해당 분야의 구민강사나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기관 등에 정보화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화교육을 수탁한 자에 대하여 교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험가입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정보화 전담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은 지역주민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과정을 편성 운영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정보화교육 수강료의 징수 등) ①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구청장은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교육개강일까지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교육개강일 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하여 반환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추진위원회에 위원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인터넷 시스템 개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제7항 중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에 의해 ” 를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 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제21조(정보자료수수료),제22조(수수료 감면대상)의 ” 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기본 조례」 제28조 ” 로 한다.

[별표 1]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기준 (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인 건 비	일반직 공무원 6급20호 봉급 ÷ 30 × 작업일수
2. 소 모 품 비	실 비
3. 제 잡 비	위 전체금액의 40%
주) 봉급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본급여를 말한다	

[별표 2]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기준 (제42조제2항 관련)

교육 시간	수 강 료
10시간 ~ 20시간	10,000원 이하
21시간 ~ 30시간	20,000원 이하
31시간 ~ 60시간	30,000원 이하
<p>비고 : 제42조제2항의 수강료 감면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